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 계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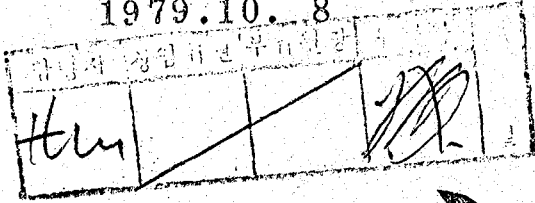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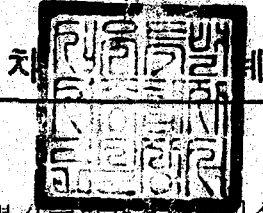
전화 75-6090

제 734 호

1979.10. 8



시 보



◎ 조 례

제 1364 호 : 서울특별시구하가전등공사사업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 3

◎ 훈 령

제 511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기동대운영규정중개정규정..... 3

◎ 고 시

제 426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백화점)절정..... 4

제 427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4

제 428 호 :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지적승인..... 5

제 429 호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지적승인..... 5

제 430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지적고시..... 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31 호 :	도시계획개발구역 지정 실효.....	6
제 432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7
제 433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	8

◎ 공 고

제 334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9
-----------	----------------------------	---

◎ 예 규

제 388 호 :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규정 개정규정.....	10
-----------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64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
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보조금지급액)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1968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책 및 1971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발새마을사업 시책에 의거 개량승인대로 건축완료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무허가건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 점용토지가 도시계획상의 계약 을 받는 경우
- 2. 점용토지가 국·공유지로서 동 토지관리청의 사정으로 인 하여 불하하지 못한 경우
- 3. 점용토지가 타인의 소유로서 소유권 관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기동대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서울특별시훈령제 511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기동대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기동대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수도 서울의 격증하는 치안수요에 신속과 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복중대(제3기동대)를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26 호

도시계획시설(시장·백화점)결정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백화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1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조서

구 분	시 장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백 화 점 (신설)	진영백화점	강남구 청남동 산67-61 일대	937.10 평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4,241.3 평

* 별첨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2 호

(79.9.12)로 시설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77.3.1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64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
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
조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4 조 (보조금지급액) 제 2 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 1968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책 및 1971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
새마을사업 시책에 의거 개량승인
대로 건축완료하였으나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주
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무허가건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점용토지가 도시계획상의 제
약을 받는 경우
2. 점용토지가 국·공유지로서
동 토지관리청의 사정으로 인
하여 불하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토지가 타인의 소유로서
소유권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기동대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서울특별시훈령제 511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기동대
운영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기동대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수도 서울의 격증하는 치안수요에 신속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복중대(제 3 기동대)를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26 호

도시계획시설(시장·백화점)결정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조서

백화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0.2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백화점 (신설)	진영백화점	강남구 청담동 산 67-61 일대	937.10 평	지하 2 층, 지상 6 층 연건평 4,241.3 평

* 별첨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2 호

(79.9.12)로 시설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가. 실효 내역

구분	구역 명칭	위 치	면적 (M ²)	비고
실효	청진지구	종로구청진동및종로1가, 공평동	57,124	
"	명동지구	중구명동1가	71,000	
"	회현제1지구	중구회현2동	15,200	
"	회현제2지구	중구회현1, 2동	16,150	
"	회현제3지구	중구회현1동	6,889	

나. 도면 : 별첨 표시도면 참조 (도면생략)

1979. 10.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432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제 13조 규정 및 건고시 제 11호 (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9. 10. 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조서

○ 오간수시장

구분	지구별	기정면적	변경면적	확 정		비 고
				평	㎡	
변경	1, 2지구	850.30 평	증 372.04 평	1,222.34	4,040.80	지상 3층, 지하 2층 시장명칭변경
"	4 지구	159.40 평	증 72.60 평	232	766.80	지상 3층, 지하 1층 시장명칭변경
"	3, 5지구	629.90 평	증 165.49 평	795.39	2,629.40	"

구분	지구별	기정면적	변경면적	확정		비고
				평	㎡	
변경	6 지구	325.90 평	증 165.51 평	491.41	1,624.90	지상 3 층, 지하 1 층
"	7, 8 지구	614.60 "	증 272.90 평	887.50	2,933.90	"
"	10 지구	488 "	증 209.68 "	697.68	2,306.40	"

○ 청룡시장

시 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확 정	
청룡시장 (소매시장)	관악구봉천동 555-2 일대	354 평	234 평	588 평	주 가

*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3 호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
계획승인

1.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 제 269 호(79.8.8)로
공람한바 있는 돈암3구역 일부에
대하여 의견서심사 후 일부 계획변경하
나. 건축계획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제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 2와
동법시행령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
계획을 승인한다.

3.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 계획
서울시청 재개발 2 과와 관할구청
시민홀 및 주택과에 관계 도서를
비치 열람하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함.

1) 건축물의 규모

구분	층수	건축면적 (기구당)	건폐율	용적율	비 고
	3 층	50 이상	35% 이하	150% 이하	단, 100평이상단독필지는연립주택기준에준함.

2)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 규모와 층수로 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사항은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평면은 구역 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 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임형으로 하여야 함.

4) 건축방법

주민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정업체로 하여금 건축함.

5) 건축기간 및 협의기간

79.9.1-79.12.31.

6) 기타사항은 동구역건축 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용함.

1979.10.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4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

- 1. 서울시 공고 제 135 호 (73.7.2) 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준공된 성산대로 가시권 정비공사 (하수도) 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25 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일반에게 공람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고장소 : 마포구청 게시판

나) 공고기간 : 1979.10. . ~ 1979.10. . (14일간)

1979. 10.

서울특별시

(공 략 개 요)

- 1. 사업장의 위치 : 마포구성산동 277 주변 및 망원동 470 주변
- 2. 사업장 종류와 명칭 : 성산대로 가시권 정비공사 (하수도)
- 3. 사업규모 : 가) 암거 (2.5X2.1X2) 연장 242
나) 하수도 (350X700) 연장 : 3,427
- 4. 사업의 시행자 : 마포구청장
- 5. 사업의 척수 및 준공예정일 : 1979.9.25 - 1979.12.30.
- 6. 사용할 토지 : 공공용지 (도로)

※ 별첨도면 생략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388 호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
처번호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10.1부터 적용
한다.

<별 표>

기 관 기 호 및 수 신 번 호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번 호	비 고
시 장 실		서 실 1	서신 1 - 3
제 1 부 시 장 실		" 2	
제 2 부 시 장 실		" 3	
기 획 관 리 관	공 보	서 관 1	서관 1 - 4
비 상 계 획 관		" 2	
문 화 공 보 관		" 3	
감 사 관		" 4	
내 무 국		서 국 1	서국 1 - 17
재 무 국		" 2	
세 무 국		" 3	
보 건 사 회 국		" 4	
환 경 국		" 5	
산 업 국		" 6	
민 방 위 국		" 7	
경 찰 국		" 8	
소 방 본 부		" 9	
도 시 계 획 국		" 10	
건 축 국		" 11	
주 택 국		" 12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고
공	원	녹지국		서국 13	
교		통국		" 14	
도		토국		" 15	
하		수국		" 16	
수		도국		" 17	
기	기	담	기	서과 1	서과 1 - 88
획	획	1	획	" 2	
관	관	2	관	" 3	
리	리	개	리	" 4	
관	관	발	관	" 5	
		무		" 6	
		계		" 7	
비	비	담	비	" 8	
상	상	당	상	" 9	
계	계	관	계	" 10	
화	화	"	화	" 11	
공	공		공	" 12	
보	보		보	" 13	
관	관		관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기	관	명	기관기호	수신처번호	비	고			
세무국	지	적	과	지	적	서과 26			
보건사 회국	보	건	행	정	과	" 27			
	의	약	과	보	행	" 28			
	사	회	과	의	약	" 29			
	부	녀	과	사	회	" 30			
	청	소	년	부	녀	" 31			
환경국	청	소	과	청	소	" 32			
	환	경	1	과	환	일	" 33		
	환	경	2	과	환	이	" 34		
임국	상	정	과	상	정	" 35			
	공	업	과	공	업	" 36			
	연	료	과	연	료	" 37			
	도	시	가	스	과	가	스	" 38	
	농	축	과	농	축	" 39			
민방위국	양	정	과	양	정	" 40			
	민	방	위	과	민	방	" 41		
도시계획국	운	영	과	운	영	" 42			
	도	시	행	정	과	도	시	" 43	
	도	시	계	획	1	과	도	시	" 44
	도	시	계	획	2	과	도	시	" 45
건축국	구	획	정	리	과	구	획	" 46	
	건	축	행	정	과	건	축	" 47	
	건	축	지	도	과	건	축	" 48	
	재	개	발	1	과	재	개	" 49	
주택국	재	개	발	2	과	재	개	" 50	
	주	택	행	정	과	주	택	" 51	
	주	택	관	리	과	주	택	" 52	
	주	택	정	비	과	주	택	" 53	
	주	택	공	사	과	주	택	" 54	
						주	택	" 55	

기	관	명	기	관	번호	수	신	처	번호	비	고
공	원	조	경	과	조	경	과	56			
		녹	치	과	녹	지		57			
녹	지	공	원	과	공	원		58			
		교	통	행	교	행		59			
		운	수	일	운	일		60			
교	통	운	수	2	운	이		61			
국		관	광	과	관	광		62			
		도	로	관	도	관		63			
		도	로	과	도	로		64			
도	로	도	로	시	도	시		65			
국		도	로	보	도	보		66			
		하	수	행	하	행		67			
		하	수	시	하	시		68			
하	수	치	수	과	치	수		69			
		업	무	과	업	무		70			
		경	리	과	경	리		71			
수	도	기	전	과	기	전		72			
국		급	수	과	급	수		73			
		수	원	시	수	시		74			
		소	방	행	소	방		75			
소	방	방	호	과	방	호		76			
본	부	지	도	과	지	도		77			
		경	부	과	경	부		78			
		보	안	과	보	안		79			
경		교	통	과	교	통		80			
찰		경	비	과	경	비		81			
		작	전	과	작	전		82			
		작	통	과	작	통		83			
국		수	사	과	수	사		84			
		형	사	과	형	사		85			

기 관 명		기 관 번 호	수 신 처 번 호	비 고
정 찰 국	정 보 1 과	정 일	서 과 86	
	정 보 2 과	정 이	" 87	
	외 사 과	외 사	" 88	
구	총 로		서 구 1	서 구 1 - 17
	중 구		" 2	
	동 대 문		" 3	
	성 동 북		" 4	
	성 북		" 5	
	도 봉		" 6	
	시 대 문		" 7	
	은 평		" 8	
	마 포		" 9	
	용 산		" 10	
	강 동		" 11	
	강 남		" 12	
	(동 작)		" 13	
	관 약		" 14	
	영 등 포		" 15	
	(구 로)		" 16	
	강 시		" 17	
직 속 기 관	지 하 철 본 부		" 1	직 할 1 - 7
	서울특별시공무원		" 2	
	교 육 원		" 3	
	서울특별시새		" 4	
	증 문 화 회 관		" 5	
	서울산업대학		" 6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농 지		" 6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노동 위원회사무국	노 동	서 구 7	
경	중 부		서 경 1	
	총 로		" 2	
	남 대		" 3	
	서 대		" 4	
	동 대		" 5	
	용 산		" 6	
	성 북		" 7	
	청 양		" 8	
찰	마 등		" 9	
	영 등		" 10	서 경 1 - 21
	성 량		" 11	
	노 동		" 12	
	동 부		" 13	
	북 부		" 14	
	서 부		" 15	
서	남 부		" 16	
	태 등		" 17	
	강 남		" 18	
	관 악		" 19	
	장 서		" 20	
	강 동		" 21	
소	중 부		서 소 1	
	용 산		" 2	
방	성 동		" 3	
	영 등		" 4	서 소 1 - 7
	복 포		" 5	
서	서 부		" 6	
	장 남		" 7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일	처	번	호	비	고
비	상	계	회	관	한	강	안	전	관	리	대	강	안
내	무	국	시	립	운	동	장	운	동	운	동	장	운
보	종	로	구	보	전	소	종	보	보	보	보	보	보
전	중	구	중	구	중	구	중	보	보	보	보	보	보
사	동	대	문	구	동	대	문	구	동	대	문	구	동
회	성	동	구	성	동	구	성	동	보	보	보	보	보
국	성	북	구	성	북	구	성	북	보	보	보	보	보
	도	봉	구	도	봉	구	도	봉	보	보	보	보	보
	서	대	문	구	서	대	문	구	서	대	문	구	서
	은	평	구	은	평	구	은	평	보	보	보	보	보
	마	포	구	마	포	구	마	포	보	보	보	보	보
	용	산	구	용	산	구	용	산	보	보	보	보	보
	강	동	구	강	동	구	강	동	보	보	보	보	보
	강	남	구	강	남	구	강	남	보	보	보	보	보
	동	작	구	동	작	구	동	작	보	보	보	보	보
	관	악	구	관	악	구	관	악	보	보	보	보	보
	영	등	포	구	영	등	포	구	영	등	포	구	영
	구	로	구	구	로	구	구	로	보	보	보	보	보
	강	서	구	강	서	구	강	서	보	보	보	보	보
	보	전	연	구	보	전	연	구	보	전	연	구	보
	장	재	장	장	재	장	장	재	보	보	보	보	보
	묘	지	관	리	사	무	묘	지	보	보	보	보	보
	강	남	병	원	원	원	강	남	병	원	원	원	원
	동	부	병	원	원	원	동	부	병	원	원	원	원
	영	등	포	병	원	원	영	등	포	병	원	원	원
	아	동	병	원	원	원	아	동	병	원	원	원	원
	정	신	병	원	원	원	정	신	병	원	원	원	원
	시	대	문	병	원	원	시	대	문	병	원	원	원
	양	로	원	원	원	원	양	로	원	원	원	원	원
	갱	생	원	원	원	원	갱	생	원	원	원	원	원

서사 1 - 70

기	관	명	기	관	번호	수	신	처	번호	비	고
보 건 사 회 국	부 녀 복 지 관 동부여자기술원 남부부녀보호지도소 아 동 상 담 소 제 1 근로자회관 제 2 근로자회관		부	복	서	사		31			
			여	기	"		32				
			부	보	"		33				
			아	상	"		34				
			일	근	"		35				
			이	근	"		36				
환 경 국	자 동 차 정 리 사 업 소 서부위생처리장 북부 "		자	정	"		37				
			서	위	"		38				
			북	위	"		39				
산 업 국	제 탕 기 검 사 사 업 소 연 료 시 험 소 도 시 가 스 사 업 소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계	검	"		40				
			연	시	"		41				
					"		42				
					"		43				
공 원 녹 지 국	녹 지 사 업 소 양 묘 " " 사 울 대 공 원 전 설 " " 어 린 이 대 공 원 관 리 사 무 소 남 산 공 원 " "		녹	사	"		44				
					"		45				
			공	전	"		46				
			어	공	"		47				
			남	공	"		48				
					"		49				
도 로 국	중 기 관 리 사 업 소 동 부 건 설 " " 서 부 건 설 " " 남 부 건 설 " " 북 부 건 설 " " 건 설 자 재 " " 토 목 시 험 소		중	기	"		50				
			동	건	"		51				
			서	건	"		52				
			남	건	"		53				
			북	건	"		54				
			건	재	"		55				
					"		56				
하수국	종합중말처리사무소			"		57					
수 도 국	수 도 관 리 사 무 소 팔 당 수 원 지 " " 구 의 " "		수	관	"		58				
			팔	수	"		59				
			구	수	"		60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번 호	비 고
	뚝도수원지사무소	뚝 수	서사 61	
	보평동 "	보 수	" 62	
수	노량진 "	노 수	" 63	
	영등포 "	영 수	" 64	
	선유 "	선 수	" 65	
원	김포 "	김 수	" 66	
	불광동보조수원지사무소	불 배	" 67	
	대현산배수지	대 배	" 68	
지	난리동 "	난 배	" 69	
	청담 "	청 배	" 70	